

컨테이너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말라리아

성별 나이 남성 35세

직종

직업관련성

컨테이너 물품 하차 및 배송업무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17년 11월 16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해외(중국, 미얀마 등)에서 들어온 컨테이너 물품 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35세가 되던 2018년 6월 14일 오후 3시경 근무 도중 고열과 오한, 관절통, 두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말라리아로 진단 받았다. 이후 동 병원에 입원하여 항말라리아제를 투여받았고, 6월 19일 호전을 보여 퇴원하였다. 하지만 혈소판 감소, 간수치 상승, 손가락 수포성 변병이 발생하여 6월 23일까지 병가 후 다시 동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컨테이너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모기에 물려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고사업장은 인천연안부두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국(위해), 미얀마로부터 들어온 컨테이너가 차량에 실려서 사업장으로 이동되고 이후 근로자는 컨테이너에서 물품 하차 및 분류, 배송차량에 물품 상차 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월~금요일의 근무시간은 8:30-18:30 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8:30-15:30 으로 격주로 근무하였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날이면 근무시간보다 약 30분 이른 시각인 7시50분~8시에 3명이상의 동료근로자와 상, 하차, 분류업무를 하였으며, 20피트와 40피트의 컨테이너 중40피트 컨테이너 하차 작업이 많았는데 약 40분가량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오전 배송이 종료되면 사업장으로 14~15시경에 복귀 하였고 15시 이후 오후 배송을 시작하였다. 만약 오후에 컨테이너 하역 일정이 있고 배송업무가 적을 경우에는 물류직원과 함께 물품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배송이 많은 날은 3번까지 사업장과 배송처를 왕복했으며, 23~24시까지 업무를 하는 날이 잦았다고 한다.

라. 기타 질환 95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질환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35세가 되던 2018년 6월 14일 오후 3시경 근무 도중 39.4℃의 고열과 오한, 관절통, 두통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의 말라리아 항체 양성으로 상세불명의 말라리아(B54)로 진단되었다. 이후 동 병원에 입원하여 항말라리아제인 hydroxychloroquine 을 6월 14일부터 3일간 투여하였고, primaquine phosphate 은 6월 17일부터 투여하였으며, 6월 19일에 퇴원하였다. 퇴원시 처방받은 항말라리아제는 primaquine phosphate이었다. 하지만 혈소판 감소, 간수치 상승, 손가락에 수포성 병변이 발생하여 추적관찰 하였으며, 2018년 7월 13일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완치 판정을 받았다. 간헐적으로 부비동염 수진을 받았고 천식으로 흡입기를 투여하고 있으며 또한 B형간염 보균자이다. 1일 15-20개비를 17년간 흡연하였고, 주 1회 소주 2병의 음주력이 있다. 출입국 기록에서 해외에 다녀온 적은 없었다. 수혈이나정맥 내약물 투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35세가 되던 2018년 6월 말라리아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 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병까지 7개월간 컨테이너 물품 하차, 배송차량에 물품 상·하차 작업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노출이 있다.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거주 장소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다. 근로자는 상·하차 업무와 배송 업무를 하면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근무하였지만, 근무지와 거주지 중 말라리아모기에 물린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는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할 수 없다. 끝